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4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 김준혁 • 이기헌 • 이수진

박희승 · 강유정 · 차지호

권칠승 · 김영진 · 모경종

김병주 • 박정현 • 김영환

서미화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극히 제한적인 자유표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제1기 자유표시구역은 7개 지역 신청 중 1개(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 지역만 지정되었고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11개 지역 신청 중 3 개 지역(서울 광화문, 명동, 부산 해운대)만 지정됨.

중앙부처의 비지속적('16년 공모·선정 / '23년 공모·선정)이고 대도시 중심(서울 3, 부산 1)의 선정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명소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전국 단위의 공모·선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축소시켜 지방자치활성화를 저해함.

따라서 자유표시구역의 지방 전면이양을 통해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자유표시구역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마케팅으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지역 경제를 육성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소통을 증대시켜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는 시장등의 신청을 받아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제1항).
- 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4제3항).
- 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의4제4항).
- 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4제5항).
- 마.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

- 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제7항).
- 바. 시·도지사와 시장등은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제8항).
- 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심의위원 회의 심의사항으로 자유표시구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 1항제3호 신설)
- 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한다)의 심의사항 중 제4호의2의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의2제4호의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를 "시ㆍ도지 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는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 지사는"을 "시장등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시·도지사에게"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등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시ㆍ군ㆍ자치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 정책위원회의"를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의"를 "시·도지사는 시장등 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와 시장등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유표시구역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표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 제7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 시 • 도지사(특별자치시장 (1)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시장 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 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제3 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에서 같다)의-----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국제행사 또는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 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 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③ 시장등은----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 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u>행정안</u> 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u>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 ⑥ (생략)
- ① <u>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u> 사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 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 <u>시·도지</u> |
|----------------------|
| <u>사에게</u> |
| 1. ~ 5. (현행과 같음) |
| ④ 시장등은 |
| |
| |
| |
| |
| <u>시·군·자</u> |
| <u>치구</u> |
| |
| |
| |
| |
| ·. |
| |
| ⑤ |
| 시·도지사는 제7조제 |
| 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 |
| <u>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u> |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
| |
| ⑥ (현행과 같음) |
| ⑦ <u>시·도지사는 시장등의</u> |
| |
| |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8 <u>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u> 사는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생략)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하다)를 둔다.

1. • 2. (생략)

<신 설>

<u>3.</u> (생 략)

② · ③ (생 략)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

| | ⑧ <u>시·도지사와 시장등은</u> |
|---|---|
| | ⑨ (현행과 같음) 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자유표시구역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
| 제 | ② · ③ (현행과 같음) 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5. ~ 8. (현행과 같음)② · ③ (현행과 같음)